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 (안 제2조)
- 나.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 신설 (안 제3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1조,제12조의3 같은법 부칙 제5조
 -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및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긴급지원**”이란 제3조 및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피지원자**”라 함은”을 “**지원대상자**”란”으로, “**받는 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위기상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 수급중지(신청탈락 포함)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변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이내인 자를 말하며, 읍·면·동장이 추천한자를 포함한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및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3. "긴급지원"이란 제3조 및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 -----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

<신 설>

<신 설>

5.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위기상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을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 수급중지(신청탈락 포함)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

가 결정 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변제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제5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 실·과		사회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최 한 주
	담 당	박 용 자
	담 당 자	장 명 희 (480-5163) 박 영 실 (480-5164)